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32
----------	-----

2025. 1. 24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1월 21일

-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지윤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‘문화재’를 ‘국가유산’ 체제로 개편하는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및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.

○ 이에, 국가유산 체제에 발맞춰 관련 조례인 「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」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법령에 따른 제명 변경
 -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
 -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

- 인용법령 명칭 변경
 - 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안 제1조 및 제2조)
 -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(안 제7조)

- 정부기구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
 - “문화재청장” → “국가유산청장”(안 제9조)

- 법령에 따른 조문 변경
 - “국외소재문화재” →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(안 제1조~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및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및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‘문화재’라는 용어를 ‘문화유산’으로 변경하고, 정부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‘문화재청장’을 ‘국가유산청장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-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변경을 통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춰 법체

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69조”를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9조”로,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국외소재문화재를”을 “국외소재문화유산을”로 한다.

1.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이란 충청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문화재의”를 “문화유산의”로,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국외소재문화재의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의”로, “국외소재문화재 보호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”을 “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

를”로, “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”을 “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문화재위원”을 “문화유산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, “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”로, “문화재로”를 “문화유산으로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)”을 “(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각각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국외소재문화재 보호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”로, “문화재청장, 국외소재문화재재단”을 “국가유산청장,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</u> <u>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69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,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.</p> <p>1. “국외소재문화재”란 충청북도에 에서 국외로 반출된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.</p> <p>2. “환수”란 국외소재문화재를 구입, 수증,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</p>	<p><u>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</u> <u>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9조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이란 충청북도에 에서 국외로 반출된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.</p> <p>2. 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을 - ----- -----.</p>

제3조(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북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단)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(이하 “실태조사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

제3조(책무) -----
----- 문화
유산의 -----
-- 국외소재문화유산 -----
-----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
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의 -----

-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국외소
재문화유산 -----
-----.

제5조(실태조사단) ① ----- 국
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--
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
조사단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문화유산위원-----

원을 시·군 향토사학자, 문화재 위원,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~ 4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제6조(자료제공)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(환수 후 관리)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.

제8조(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)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

--.

③ 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자료제공) 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

-----.

제7조(환수 후 관리) 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-----
「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-----
문화유산으로 -----.

제8조(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) ① ---- 국외소재문화유산

-----.

② -----
-- 국외소재문화유산 -----

-----.

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
활동 사업

2.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
에 대한 교육·홍보

3. (생략)

③ (생략)

제9조(협조체계 구축)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장, 국외소재문화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1. 국외소재문화유산 -----

2. 국외소재문화유산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협조체계 구축) -----국외
소재문화유산 보호 -----

----- 국가유산청장, 국외소재
문화유산재단 -----

-----.